

2024년 성동구의회 속기보조 채용 공고

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속기보조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. 4. 15.

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

■ 채용 개요

채용분야	채용인원	채용기간	채용방법
속기보조	6명	2024. 6.5.~6.28. (14일 이내)	서류심사 후 결과통보

■ 채용 일정

모집공고	원서접수	합격자 발표
2024. 4. 15.(월) ~ 4. 22.(월)	2024. 4. 15.(월) ~ 4. 25.(목)	2024. 5. 2.(목) 18시 (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유선통보)

■ 근로 조건

- 보 수: 일급 91,488원
- 기 간: 2024. 6. 5. ~ 6. 28. 기간 중 14일 이내
- 근로시간: 1일 8시간(09:00~18:00까지, 휴게시간 12:00~13:00 제외)
- 근로장소: 성동구의회
- 담당업무: 제1차 정례회 속기록 작성

■ 응시 자격

- 한글속기 3급 이상 국가자격증 소지자(합격 시 속기기계, 노트북, 녹음기 지참)
- 공고일 현재 만 20세 이상인 자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

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 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 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- 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○우대자: 지방자치단체, 국가기관,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의 속기업무 근무경력자

■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

접수기간	2024. 4. 15.(월) ~ 4. 25.(목)
접수방법	※ e-mail 접수(iamhong@sd.go.kr) 공고문에 첨부되어 있는 응시원서 및 이력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, 제출서류와 함께 이메일(iamhong@sd.go.kr)로 접수
제출서류	1. 응시원서 및 이력서 각 1부. (※ 첨부양식 참조, 사진부착) 2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처리 동의서 1부. (※ 첨부양식 참조) 3.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사본 각 1부.
※합격 시 제출서류	1. 주민등록초본 1부.(주민등록번호 전부 기재) 2. 통장사본 1부.

■ 전형 방법

-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증 등 관련서류 제출 여부를 심사하고, 속기능력 및 관련분야 근무 여부 등 채용기준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채용

■ 기타 사항

- 접수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, 응시서류의 기재 착오 및 누락, 증빙자료 미제출,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.
- 합격자 통지 후, 또는 근로계약 체결 후라도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에 부적절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
- 합격자의 포기, 합격 취소, 임용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본 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합격자 발표 및 일정 등 중요 변경 사항을 개별 통보 합니다.

■ 문의 :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회사무국 의사팀 (☎02-2286-6459)